

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

제 5.1 조 목적

이 장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5.2 조 적용범위

이 장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.

제 5.3조 권리 및 의무

양 당사국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, 「국제식물보호협약」 및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지침, 절차 및 정보를 고려하여, 「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」 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준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.

제 5.4 조 위험평가

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위험평가는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평가된다.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위험평가 요청을 적절히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제 5.5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.

2. 위원회는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이러한 목적으로, 위원회는

- 가. 「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」의 이행을 점검한다.
- 나.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.
- 다.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을 강화한다.
- 라.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, 절차 또는 위생지위의 모든 변경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한다.
- 마.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투명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 작업장 승인에 대한 신속한 통보를 장려한다.
- 바.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, 국제식품규격위원회, 세계동물보건기구, 「국제식물보호협약」 체제하에 운영되는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, 그리고 식품안전과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한 그 밖의 국제 및 지역 포럼의 회의를 위한 문제, 입장 및 의제에 관하여 논의한다. 그리고
- 사. 상호 수용가능한 의견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과 이 장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한다.

3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45일 이내에 위원회의 각 당사국 수석대표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서한의 교환을 통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.

4.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2년에 한번 회합한다. 위원회는 직접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회합할 수 있다.

5. 위원회는 다음의 기관이 조정한다.

- 가. 한국의 경우,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 기관, 그리고
- 나. 콜롬비아의 경우,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농업축산국과 보건사회보호부 산하 국립식품의약품감독청 또는 그 각각의 승계 기관